

2024. 9. 12.(목)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심사보고서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차례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 원안가결 (5), 수정의결(2)

<원안>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원안>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수정>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정>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원안> 충주시 장자숲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원안>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원안> 양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793호
- 나. 제안자: 채희락 의원
-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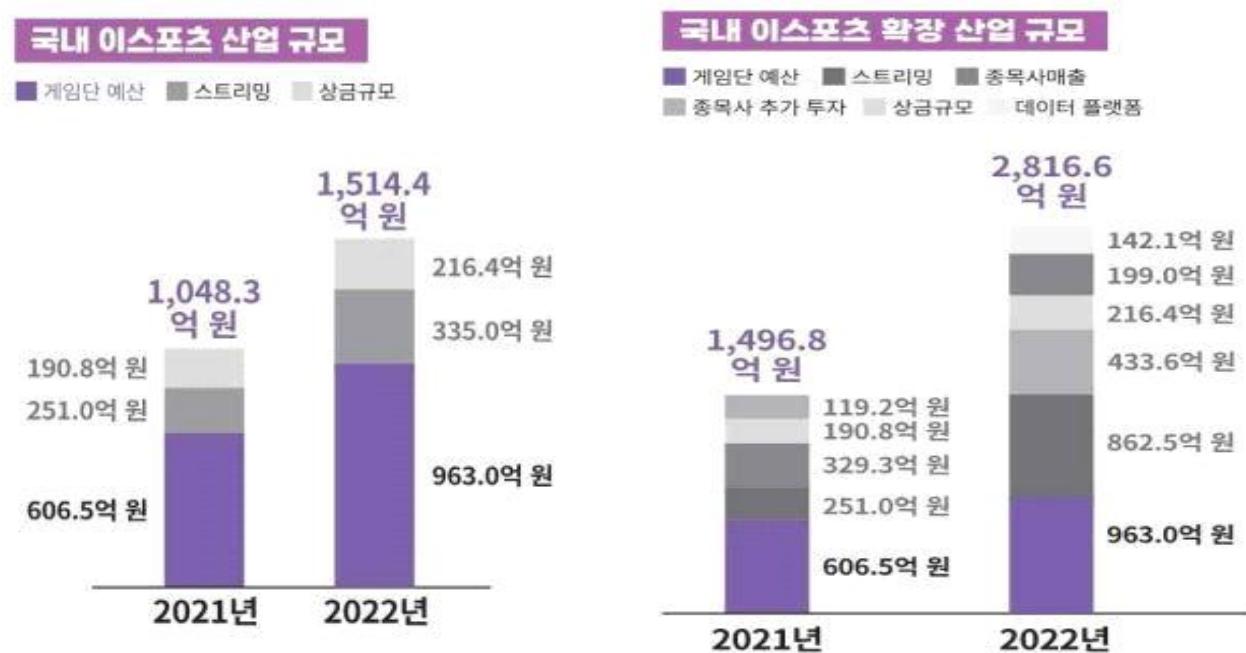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이스포츠(전자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입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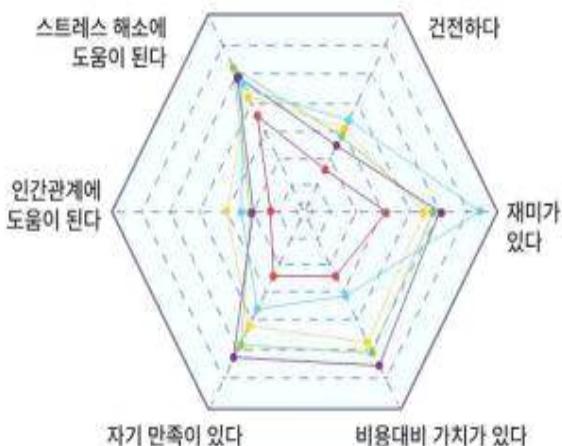
- 이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1년 1,048억 원 22년 1,514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승하였으며,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여가활동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여가활동으로써 이스포츠에 대한 평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60대



평가항목	이스포츠 시청/관람				
	10대	20대	30대	40대	5/60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9.1	11.3	12.9	12.3	12.7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2.5	4.8	3.0	3.1	3.0
자기 만족이 있다	4.3	7.1	10.1	6.1	10.7
비용대비 가치가 있다	4.8	10.8	11.2	8.9	13.7
재미가 있다	6.4	15.0	15.2	21.8	19.8
건전하다	3.7	9.5	8.7	12.3	7.1

<2023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러한 이스포츠 규모 상승 등의 이유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 진천군을 포함한 61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스포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이스포츠 사업 추진과 관련, 출자·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가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며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서 관리위탁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임.

○ 종합검토 의견

- 커져가는 이스포츠 산업과 시민의 여가생활 등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사업추진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④ 질의·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801호
- 나. 제안자: 충주시장(기획예산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도비보조) 신규사업의 대상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정의 규정(안 제2조제4호): 「산후조리비」 정의 규정
- 지원사업 신설(안 제13조제3호)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설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안 제14조제4항):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침에 따름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임.
- 개정안 제14조제4항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침에 따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건강식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임.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시 행 일: 2024. 5. 1.(충북시군 동시 시행)
- 대 상: 신청일 기준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충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
-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용처: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
→ 산후조리비용 증빙건에 대하여 지원 범위 내 지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산모계좌 지급)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 산: 444,000천원(도비 40%, 시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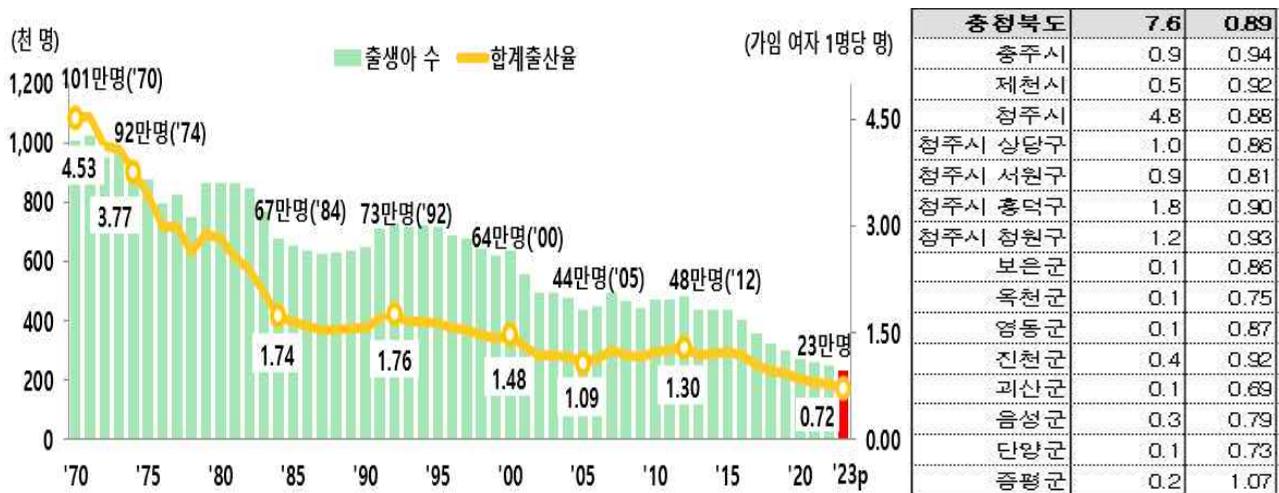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지자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임산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적합함.

○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잠정)은 0.72이며, 관내 합계출산율은 0.94¹⁾로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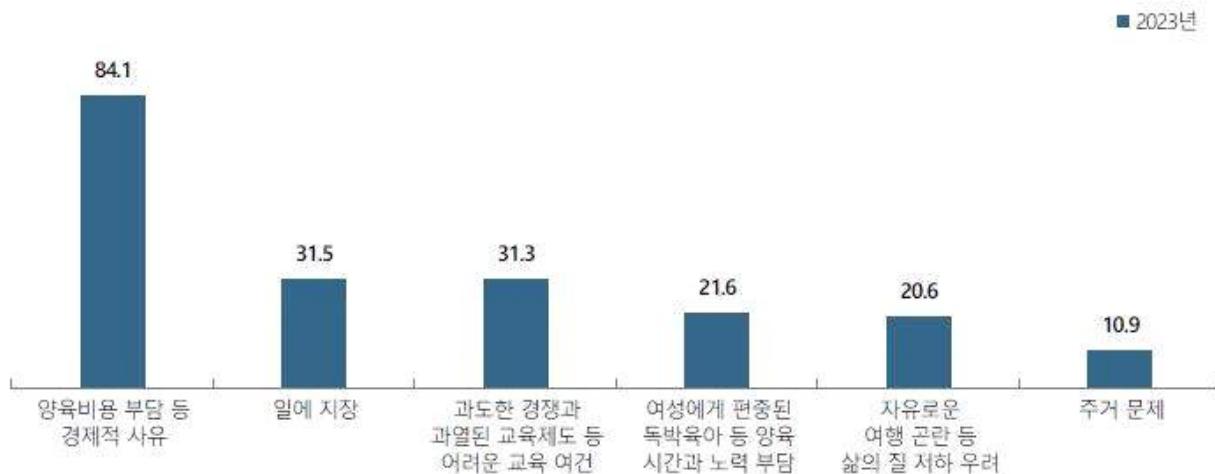


- 특히, 관내 시민들에게 자녀를 낳은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²⁾ 1위는 84.1%가 압도적으로 응답(복수)한 양육 비용부담 등의 경제적 사유로, 출산가정에 임산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1) 통계청 보도자료(2024. 2. 28.)

2) 2023년 충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3년 충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자녀를 낳은 의향이 없는 이유>

[관련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질의 · 답변 요지: 생 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794호
- 나. 제안자: 충주시장(징수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수정의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 삭제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조문 용어와 별표등을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 삭제 및 관련 사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삽입(안 제4조 및 부칙)
- 수수료 반환요건에, 과오납, 발급기관의 귀책사유조항 신설(안 제12조)
- 수수료 면제대상 조정(안 제13조)
- 수수료금액 신설 · 삭제 · 변경(안 별표1)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충주시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와 면제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금액을 개정된 별표 1로 규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2항에 따라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 규정에 대한 근거 부재를 방지하였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게 함.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별표 1의 수수료 개정 사항은 대장문서, 건물도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수상레저 관련 증명서임.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징수 수수료의 종류는 100여개가 넘으며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음. 또한, 상위법이 개정되면 수수료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수수료의 종류가 100여개가 넘어가고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안 제4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요율과 징수 구 분) 각종 증명 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대장문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을 반영하여 500원으로 개정됨.
- 건물도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100원으로 개정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10,000원으로 개정됨.

- 하천점용 수수료 등은 「하천법」 제89조(허가수수료) 폐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됨. 별표 1의 바. 8) 도선장 설치허가 또한 하천점용의 종류 중 하나로 삭제할 것을 제안드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p> <p>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28조 관련)</p> <p>바. 건설 운수 관계</p> <p>5)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p> <p>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 사항</p> <p>7) 재식 및 농업용 하천 (공유수면)점용허가</p> <p>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p>	<p>[별표 1]</p> <p>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28조 관련)</p> <p>바. 건설 운수 관계</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p>	<p>[별표 1]</p> <p>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28조 관련)</p> <p>바. 건설 운수 관계</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8) 삭제</p>

- 동력 수상레저 등록 등의 수수료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수상레저사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각각 개정됨.
- 안 제12조는 신청인의 의사여부에 의해서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잘못 발급 되었을 경우 신청이 없어도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행정편의적인 측면을 완화함.

- 안 제13조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 현 조례에 있었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이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였으며, 각종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2. 13.>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	----	-----	--------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법 제106조제1항제 13호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3) 지적도	가로21cm, 세로30cm	700원	
4) 임야도	가로21cm, 세로30cm	7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500원	
나. 인터넷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3) 지적도	가로21cm, 세로30cm	무료	
4) 임야도	가로21cm, 세로30cm	무료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수수료)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3. 1. 1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납부 대상자	금액
1.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1,500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00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13,500원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가)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나)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500원(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3,500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 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

납부 대상자	금액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나)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800원 64,800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400원(교재비를 포함한다)
3. 법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가) 면허증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나)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5,000원 4,000원
4.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가)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나)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다)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 라)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	20,000원 10,000원 없음 20,000원

④ 질의 · 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수정의결

⑥ 첨부서류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794-1
------------	--------

제출일자 : 2024. 9. 12.

제 출 자 :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에 누락 될 수 있는 수수료 등에 대한 단서 규정 추가
- 하천점용 수수료 폐지에 따른 하천점용 수수료 삭제
- 조문과 별표의 자구 일치

2. 주요내용

- 수수료 금액의 단서 조항 추가(안 제4조)
- 별표 1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 삭제
- 별표 3의 감면을 면제로 변경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1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u>제4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 등</u> <u>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u> <u>다.</u></p>	<p><u>제4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 등</u> <u>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u> <u>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u> <u>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u> <u>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u> <u>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u> <u>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u> <u>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u></p>

[별표 1]

개정안	수정안
<p>[별표 1]</p> <p>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28조 관련)</p> <p>바. 건설 운수 관계</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p>	<p>[별표 1]</p> <p>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28조 관련)</p> <p>바. 건설 운수 관계</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8) 삭제</p>

[별표 3]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13조제2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
1.5cm
↓

← 15cm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795호
나. 제안자: 충주시장(회계과장)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바. 의결결과: 수정의결

① 제안설명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수정 등 현행화
- 안 제17조: 무상 사용허가 기간일 개정(기부채납일→사용허가일)
 - 안 제34조: 감액조정 범위 확대(일부 또는 전부→전부)
 - 안 제35조: 납기 개선(분할납부 기준횟수 연 6회→연 12회)
 - 안 제63조제1항: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 사회적 인식에 따른 차별적 어구 수정
- 별표 1의 제4호 : 장애자 → 장애인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재량을 부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 된 것임.

○ 상위법령 저촉 여부, 재량권 일탈 여부 검토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 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일’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무상 사용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초래하므로 안 제17조의 무상 사용허가 기산일은 개정안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안 제34조는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해 행정재산 ·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하게되면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전액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 대부료가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부분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 할 수 있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음.
- 안 제35조는 50만원 이상 또는 벤처기업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리려는 사항으로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게 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어긋나지 않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는 50만원이 초과하는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 걸쳐 분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안 제63조의 50만원 초과의 변상금을 1년에 2회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현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권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을 준수하였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질의 · 답변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첨부서류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795-1
------------	--------

제출일자 : 2024. 9. 12.

제출자 :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대부료 납기 횟수 조정
- 변상금 분할 납부 횟수 조정

2. 주요내용

- 대부료 분할 납부 조정 (안 제35조)
- 변상금 분할 납부 조정 (안 제63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12회”를 “12회 이내”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이상**”을 “**이내**”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796호
- 나. 제안자: 충주시장(문화관광비전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수탁자의 운영프로그램, 협약 관련 이용료 감면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체험객 만족도 증대 및 카누체험장 운영률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수탁자 관련 이용료 감경사항 마련(안 제9조제2항)
-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의 이용자
- 관련 조항 수정(안 제9조제1항, 제10조, 별표 3)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카누체험장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탁자와 관련된 감면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안 된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이용료 감액 또는 면제는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 직접 규정 해야하며 개별법인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 또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 사항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요구됨.
- 2024. 4. ~ 6. 장자숲 카누체험장의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률³⁾이 57%이며 주중의 이용률은 45%에 불과함.
- 저조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수탁자 운영프로그램 참여자와 업무협약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3) 평균인원 / 최대인원

[참고사항]

■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실적

- 운영실적[4. 6.(토) ~ 6. 24.(월) / 58일 중 46일간 운영(평일 29일, 주말 17일)]

구 분	이용객	이용객 평균인원 (이용객/운영일수)	이용률 (평균인원/최대인원)	수익(원)	비 고
평 일	634명	21.8명 (일 최대 48명)	45%	8,939,000	우천 4일 취소
주 말	953명	56명 (일 최대 80명)	70%	12,837,000	우천 8일 취소
합 계	1,587명	34.5명	57%	21,776,000	

- 세부운영실적

구분	인원(명)						총인원 (명)	타지역 비율	수익금			
	평일			주말								
	충주시	타지역	계	충주시	타지역	계						
4월	79	72	151	197	110	307	458	40	5,923,000			
5월	106	141	247	224	200	424	671	51	9,388,000			
6월	67	208	275	75	108	183	458	57	6,465,000			
합계	252	421	673	496	418	914	1587	49	21,776,000			

④ 질의 · 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803호
- 나. 제안자: 충주시장(정보통신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 및 시민 안전을 위해 통합관제 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

②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년 (2025. 1. 1.~ 2026. 12. 31.)
- 소요예산 : 2,130백만원 (연 1,065백만원 / 2년)
 - 1차년도 필요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인원	예산	비고
계	20명	1,065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10명	532.5	도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0명	532.5	시비

- 2차년도는 예산 범위 내 단가 재협약 예정

○ 위탁내용

- 24시간 CCTV 영상 감시
- 범죄 등 발생시 신속 상황 대응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 CCTV 및 관련시스템 장애 처리(유지보수업체 연락 등)
- 보고서 제출 및 관련 규정 준수, 통합관제센터 정비 등
- 모니터링 요원 20명 관리 등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8항 규정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CCTV 관제업무는 시민들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및 수탁기관의

성과측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질의 · 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

양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제3804호
- 나. 제안자: 충주시장(관광과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8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 마. 상정일자: 2024년 9월 06일
- 바. 의결일자: 2024년 9월 06일
-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양성온천광장 위탁운영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위탁시설

- ▶ 시설명: 양성온천광장
- ▶ 소재지: 충주시 양성면 새바지길 17
- ▶ 시설규모: 부지면적 14,515m² / 건축 연면적 122.02m²

※ 세부시설: 광장, 관리동 1동, 메인무대 1식, 주차장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위탁내용
 - ▶ 양성온천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
 - ▶ 양성온천광장 사용허가
 - ▶ 양성온천광장 관광 활성화
-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결 시) 재계약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소요예산(안) 및 산출내역
 - ▶ 소요예산: 84,468,000원(연 28,156,000 × 3년)

(단위: 원)

합 계	인건비 (사회보험 포함)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물유지비
28,156,000	11,521,000	5,460,000	1,375,000	9,800,000

③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4. 12. 31. 부로 만료되는 양성온천광장 관리 사무를 기존의 수탁자인 (사)양성온천광광협의회와 재계약⁴⁾을 위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재위탁, 재계약 민간위탁 절차 비교

4)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구분	재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 방법 등	성과평가실시
↓	↓	
의회동의	위탁예정(만료) 90일 전 까지	위탁예정(만료) 90일 전 까지 ※ 평가결과와 함께 제출
↓	↓	
수탁자 선 정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및 심사, 재계약 적정성 심사)
↓	↓	
계약체결	위탁 계약 체결 및 홈페이지 게시	
↓	↓	
사후관리	· 운영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 지도 · 감독, 처리결과 감사 등	

- 양성온천광장은 2007. 12.에 조성되어 2010. 3. 1. ~ 현재까지 사단법인 양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음.
- 2016년, 2019년, 2022년 양성온천광장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 시 모두 유찰된 이력이 있어 10년이상 양성온천광장을 관리해 온 양성온천관광협의회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 양성온천광장 운영은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행정관리업무로 위탁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시설의 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타고 판단 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질의 · 답변 요지: 생략

⑤ 심사결과: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없음